

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734호, **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'26년 5월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6년도 수입계획 변경을 통해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액을 증액하고(증 723백만원),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라 실제 징수한 보조금 반환수입 9백만원, 위탁비 반환수입 127백만원, 기타 이자수입 306천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자 함
- 나. 2026년도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을 조정함(증 826백만원)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○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'26년 당초 계획(A)	'26년 1차 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 계	7,278,501	8,104,597	826,096 (11.3%)
216 이자수입	112,754	112,541	△213 (△0.2%)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112,235	112,235	-
216-03 기타이자수입	519	306	△213
223 보조금반환수입	32,848	135,846	102,998 (313.6%)
223-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8,474	8,589	115
223-03 위탁비반환수입	24,374	127,257	102,883
714 예치금 회수	2,950,342	3,673,653	723,311 (24.5%)
714-01 예치금회수	2,950,342	3,673,653	723,311
721 전입금	4,182,557	4,182,557	-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4,182,557	4,182,557	-

○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(정책/단위/세부)	'26년 당초 계획(A)	'26년 1차 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 계	7,278,501	8,104,597	826,096 (11.3%)
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	4,053,140	4,053,140	-
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	1,932,864	1,932,864	-
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	1,018,456	1,018,456	-
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	451,771	451,771	-
해외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	66,333	66,333	-
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	396,304	396,304	-
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	1,820,276	1,820,276	-
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	150,200	150,200	-
서울지오D추진	1,316,000	1,316,000	-
해외도시 물품나눔	50,000	50,000	-
스마트시티국제개발협력	230,000	230,000	-
디지털동행프로젝트	74,076	74,076	-
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	300,000	300,000	-
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	300,000	300,000	-
행정운영경비(기본경비)	5,000	5,000	-
재무활동(예치금)	3,220,361	4,046,457	826,096 (25.7%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¹⁾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7억 2,300만원 증가하고, 보조금반환수입(1억 200만원 증가)과 이자수입(△213,000원)이 증감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한 지출계획도 **예치금**을 8억 2,6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(32억 2,000만원)보다 25.7%, 8억 2,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-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국제개발협력기금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기금의 용도)

1.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
2.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